

11) 전례적 사목활동

성음악에 대한 교구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개별 본당의 성음악은 결국 본당 사목자의 개인적 판단에 맡겨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본당의 현실 속에서 성음악이라는 것은 한 개인에 의해 결정될 수만은 없는 방대한 분야와 관계되어 있다.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형태의 음악에 대한 비평적 판단, 가사의 바탕을 이루는 성서학, 신학 및 교리와 문학에 대한 지식, 교우들이 생활하는 세상의 음악적 경향과 그 바탕을 이루는 심성에 대한 연구, 음악단체의 조직 및 운영과 재정에 대한 능력등 사목자 한 명이 감당하기에는 그 분야가 너무나 벽찬 것이다. 교구에서는 개별사목자의 사목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희년(禧年)의 선포에 따른 구체적 실행지침을 전달한다거나 인사 및 재정과 관계된 여러가지 정책과 교육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성음악 분야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황청의 여러 문헌들이 교구적 차원의 위원회 설립등을 통해 조직적 지원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래서 성음악 이외에도 대단히 많은 분야의 사목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본당 사목자는 이를 그저 본당 수도자나 지휘자, 혹은 전례분과의 한 봉사자에게 일임하는 일들이 허다하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성가는 전례중에 교우들의 신앙적 양태를 결정짓는데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전례의 생동감과 관계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의 활성화와도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이처럼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목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계되어 「전례현장」에서는 “거룩한 전례에 관한 위원회”를 언급하면서 전례의 개혁과 그 실천에 대한 “공동체적 노력”을 증진시킬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전례적 사목활동”이라 칭하고 있다. 전국이나 교구단위에 대해 공의회가 지칭한 이러한 사목활동은 당연히 본당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성음악과 관계된 사목분야에서 사목자는 홀로 그 짐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교우들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세속 분야는 그것이 노인분야이든 청소년분야이든 평신도가 더 잘 알고 있기에 사목자에게 있어서 이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미사곡에 대한 결정, 특별한 전례중에 어느 부분을 성가로 부를 것이며 어떤 형태의 성가를 부를 것인지, 성가대에게만 맡길지 혹은 다함께 부르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 전문가 초빙에 대한 건, 성음악 봉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이나 그 재정계획등과 같이 성음악과 관계된 여러 판단에 있어서 사목자는 특별히 전례분과를 중심으로 “전례적 사목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당 사목에 있어서의 “공동체적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다. 사목자가 음악 애호가인 본당에서는 성가대 지휘자를 지나치게 신뢰하여 전례분과는 소외된 채 성음악에 대한 사목적 판단이 지휘자와 같은 개별인에 의해 좌우되거나 또는 반대로 사목자가 음악에 관심없는 본당에서는 성가대 지휘자가 전례분과 회의에서 소외되는 일조차 벌어지곤 한다. 공의회가 특별히 “전례적 사목활동”이라는 말로 공동체적 논의와 판단을 권고하며 요구하는 것은 성음악에 대한 사목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편파적 양상들에서 탈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례현장」에서는 전례에 대한 평신도의 참여는 “전례 자체의 본질에서 요구되는 것”(14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팬데믹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성음악 정책에 있어서 성음악 봉사자를 비롯한 평신도의 참여는 더욱 꼭넓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참여는 더욱 깊이 있게 이루어져 공동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리라 여겨진다.